



"담 한장의 어음도 쓰지 않는 기업"

<http://www.ihoban.co.kr>

주식회사 호반건설

우)445-813 경기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222번지/전화070)7094-7590/팩스031)378-6109

문 서 번 호 호반건설 2012-0262

발 신 일 자 2012. 08. 16.

수 신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창 조

제 목 동탄2신도시 A22블록 호반베르디움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동탄2신도시 A22블록 호반베르디움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1)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22블록
- (2) 규모: 아파트 1,002세대 중 이주대책대상 제외 일반특별공급 91세대
- (3) 견본주택 오픈 예정일: 2012. 8. 24 (금)
- (4) 특별공급 신청 예정일: 2012. 8. 27 (월)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업무협조 사항

- (1) 특별공급 대상자 통보일: 2012. 8. 24 (금)
- (2) 대상자 통보 불응시: 특별공급 신청일까지 확인서(및 추천서) 발급
- (3) 특별공급 대상자 제한: 통보대상 및 확인서(및 추천서) 발급 받은 자에 한 함.
- (4) 대상자 배정 회신: (우 445-813)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222번지
동탄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TEL.031-897-0030
- (5) 담당자: 분양팀 강동원 과장 TEL.070-7094-7590

※ 불임,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끝.

주식회사 호 반 건 설
대표이사 최 종 만



(উফা: π^* , $K(\Omega)$)

구분	이웃정보 주제관리번호	주목액 (주거임대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기타 면적면적	합계	세대별 면적기준 (㎡)	계	세대별 면적기준					합계 면적	세대 별 면적	인구 인구 인구
			세대별 계약면적			이주 면적 (주거 면적)					합계 (주거 면적)	다세대 면적	신용 면적	노년모 면적	합계 면적			
			주거 면적	주거 면적	주거 면적													
민정주관																		
	2012000709-01	84.9537A	84.9537	23.7457	108.6994	47.5551	156.2545	63.0471	540	9	45	27	54	16	389	101동~109동, 113동	24	15,033
	2012000709-02	84.9698B	84.9698	24.0435	109.0133	47.5641	156.5774	63.0591	212	-	21	11	21	6	153	101동, 110동~113동	7	
	2012000709-03	84.9909C	84.9909	24.1251	109.1160	47.5759	156.6919	63.0747	250	-	25	12	25	8	180	101동~102동, 108동, 110동, 113동	9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이주대책대상자·군인·종소리업근로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순위 청약이 제한되나, 2순위로 청약가능(단,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85㎡이하 또는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85㎡이하 또는 102㎡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기관추천(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 신혼부부 / 다자녀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85㎡이하 또는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85㎡이하 또는 102㎡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85㎡ 초과 102㎡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자는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지속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월거민,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음)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청약예금 : 85㎡이하 또는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잔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85㎡이하 또는 102㎡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금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세대

(단위: ㎡ / 세대)

구분		84.9537A	84.9698B	84.9909C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대책 대상자	9	-	-	100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월거민, 중소기업근로자 등	45	21	25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특종이 발급된 자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일시 : 특별공급 접수일(미정) 17:00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개채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당첨자 발표일(미정)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개채 및 파이낸셜뉴스 신문 개채	• 일시 : 당첨자 발표일(미정)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f2you.com)	• 일시 - 계약체결일(미정) (3일간, 09:30~16:00)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2순위			
	3순위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 당사 건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비고
	필수	추가 (해당지)		
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특별공급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임신증명서류(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임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임주자지속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정보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기각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임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